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 및 인사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여성가족부차관 밑에 감사인사 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여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5.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4. 25. ~ 5. 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4항 중 “혁신행정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제6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16.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17.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19. 행정심판·소송사무 및 법령 질의회신의 총괄
20.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감사인사담당관) 감사인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생략)	제3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 담당관, <u>혁신행정담당관</u> , 법무 <u>감사담당관</u> , 국제협력담당관 및 정보통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 다.	④ ----- ----- <u>혁신행정법무담당관</u> --- -----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혁신행정담당관</u> 은 다음 사항 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 한다.	⑥ <u>혁신행정법무담당관</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국민제안 및 자체 제안제도 의 운영·관리</u>	<삭제>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u>부내 민원 업무의 총괄 및 민 원 관련 제도개선</u>	<삭제>
7. ~ 13. (생략)	7. ~ 13. (현행과 같음)
14. <u>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u>	<삭제>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신설>	16. <u>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법</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⑦ 법무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발간
2. 부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4. 행정심판·소송사무 및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5.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6.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규집의 편찬·발간

17.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등에 관한 사항

19. 행정심판·소송사무 및 법령질의회신의 총괄

20.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의 총괄

<삭 제>

7. 다른 기관에 의한 여성가족
부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한 감
사결과에의 처리

8.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
한 사항

9.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및
병역사항·선물 신고와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
항

10. 진정·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⑧·⑨ (생략)

<신설>

⑦·⑧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3조의3(감사인사담당관) 감사인
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과학기
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

다.